

 교육부				<h1>해명자료</h1> <p>2020. 2. 7.(금) 배포</p>		
보도일	배포 즉시					
담당과	교수학습평가과	담당자	과 장	조훈희 (☎ 044-203-6729)	교육연구원	박수경 (☎ 044-203-6447)

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연합뉴스(박성진 기자 등 / 2020. 2. 7.(금)
- 제목 : “교육부, 신종코로나 ‘천재지변’ 판단... 수업일 단축허용”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>

- 해당 기사 중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 -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,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
 - 향후 교육부는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.
-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(유치원 180일, 초·중·고 190일)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,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,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음을 이미 안내하였습니다.

※ [붙임 1] : 개학연기,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설명자료(20.2.4)

-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감염 우려 정도,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의 휴업 기준 마련 및 학교장의 휴업 실시를 안내한 바 있으며, 장기간(15일 초과)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- 학교(유치원 포함)의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.
 - 다만, 감염증으로 인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,
 - 수업일수의 단축이 불가피한 일부 학교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단축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한 것입니다.
- ※ [붙임 2] :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방안 안내('20.2.6.)**
-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흔들림없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,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

 		<h2>설명자료</h2> <p>2020. 2. 4. (화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
담당과	교수학습평가과	담당자	과 장 조훈희 (☎ 044-203-6729) 연구관 박수경 (☎ 044-203-6447)
	유아교육정책과	담당자	과 장 이지은(☎ 044-203-6445) 사무관 강명원(☎ 044-203-6498)

개학연기,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동아일보(최예나김수연 기자 / 2020. 2. 4.(화))
- 제목 : “전국 유치원-초중고 336곳 들쭉날쭉 휴업”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*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,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.
 - *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(유치원 포함)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
- 현재 학교(유·초·중·고)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*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.
 - *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2항, 「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·대응 매뉴얼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5조 및 제47조, 「유아교육법」 제12조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제14조 등
- 다만 학교 소재 지역의 감염증 상황, 개학 및 방학 등 학사운영 일정, 학교 인적 구성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학교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

□ 학교가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와 판단 기준

-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
- 2·3차 감염 지역 및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
-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 (예: 전체의 30%이상)하는 경우
-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

②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

-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수시 협의체제 유지, 시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
 - 시도교육감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일정 조정 요청 → 교육부는 검토 후 동의 → 시도교육감은 지역 또는 학교의 휴업 명령·권고·허가 조치
 - 학교장은 지역 보건당국 협의, 교육(지원)청 협의,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 조정 → 교육(지원)청에 보고
 - 학교장은 법정 수업일수*를 고려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되, 긴박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/10까지 감축 가능
- * (유치원) 180일, (초·중·고등학교) 190일

③ 학사일정의 조정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

- 생활지도, 저소득층 급식지원,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, 등교 희망 학생 관리, 수업 결손 보충계획 수립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

□ 교육부는 위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안내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육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특수학교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방안 안내

- 1. 관련: 교수학습평가과-406(2020.2.3.) 및 451(2020.2.4.)
- 2.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개학연기 및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수업시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, 귀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파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o 지역 및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, 학년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축한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수업시수 감축 허용

- * 수업일수의 최대 1/10까지 감축 가능(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, 19일)하며, 주리부가 기 안내한 학사일정 조정 절차 준수 → 주리부 협의 완료 후 수업일수 감축
- 수업시수 감축 시,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,
- 다음 학기(학년)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,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

- 3. 아울러,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점검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 :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

교육연구관 박수경 교수학습평가 전결 2020.2.6.
과장 조훈희

협조자 교육연구사 이현석

시행 교수학습평가과-513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/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6339 팩스번호 044-203-6705 / soogyong@korea.kr / 대국민 공개